보도	보도 · 불		
방법			
과장		국장	

기 안 용 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설 30312- 234	(전화 : 731-6346)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 준영구. 10. 5. 3. 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5년.		
시행일자	87. 5. 20.		

보조기관	도시계획국장 전결	협조기관	법무담당관 심사필	문서통제
	시설계획과장		협조 통제관 행정과장	
	시설계획1계장			
기안책임자	이 상 진(김용덕)			발송인

경유	각 안 참 조
수신	
참조	
제목	도시계획시설(유수지)변경결정

(제1안) : 내부결재

1. 구획 30320-312('87.4.2)호와 관련입니다.

2. 영동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강남구 대치동 985의 도시계획시설(유수지)

이 주변 여건 변동으로 기능이 상실되어 변경코자 우리시 제2차 도시계획 위원회('87.5.7)

에 상정 심의 가결되어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별안과

같이 변경결정 코자 합니다.

첨부 : 관계서류 1건. 끝.

(제2안) : 고시안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1505-25(2-1) 일(1)갑
85. 9. 9. 승인

3597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가 40-41 1985. 10. 29.

도시계획시설(유수지)변경결정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 제4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및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와 시민봉사실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 5.

서 울 특 별 시 장

○ 변경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규모(m²)	비고
기정	유수지	강남구 대치동 985	15,440.6	
변경	"	"	0	폐지

○ 도면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및 강남구청 비치도면과 같음.

(제3안)

수신 : 건설부장관

참조 : 도시시설계획과장

제목 : 같음.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보고합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및 도면 각1부. 끝.

(제4안)

수신 : 총무처장관

제목 : 관보게재 의뢰

1. 다음과 같이 관보게재 의뢰 합니다.

가. 게재구분 : 고시

나. 게재건명 : 도시계획시설(유수지)변경결정

다. 법적근거 : 도시계획법 제12조.

라. 게재내용 : 별첨.

첨부 : 고시문 사본 2부. 끝.

(제5안)

수신 : 강남구청장

참조 : 도시정비과장

제목 : 같음.

1. 귀구관내 대치동 985번지의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니, 도시계획 업무에 참고하고 관련부서에 알리기 바람.

첨부 : 고시문 사본및 도면 각1부. 끝.

(제6안) Pof.

수신 : 수신처 참조 발신 : 과장

제목 : 갈음

1. 우리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을 별첨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시문 사본및 도면 각1부. 끝.

수신처 : 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과장, 건축지도과장, 관재과장, 치수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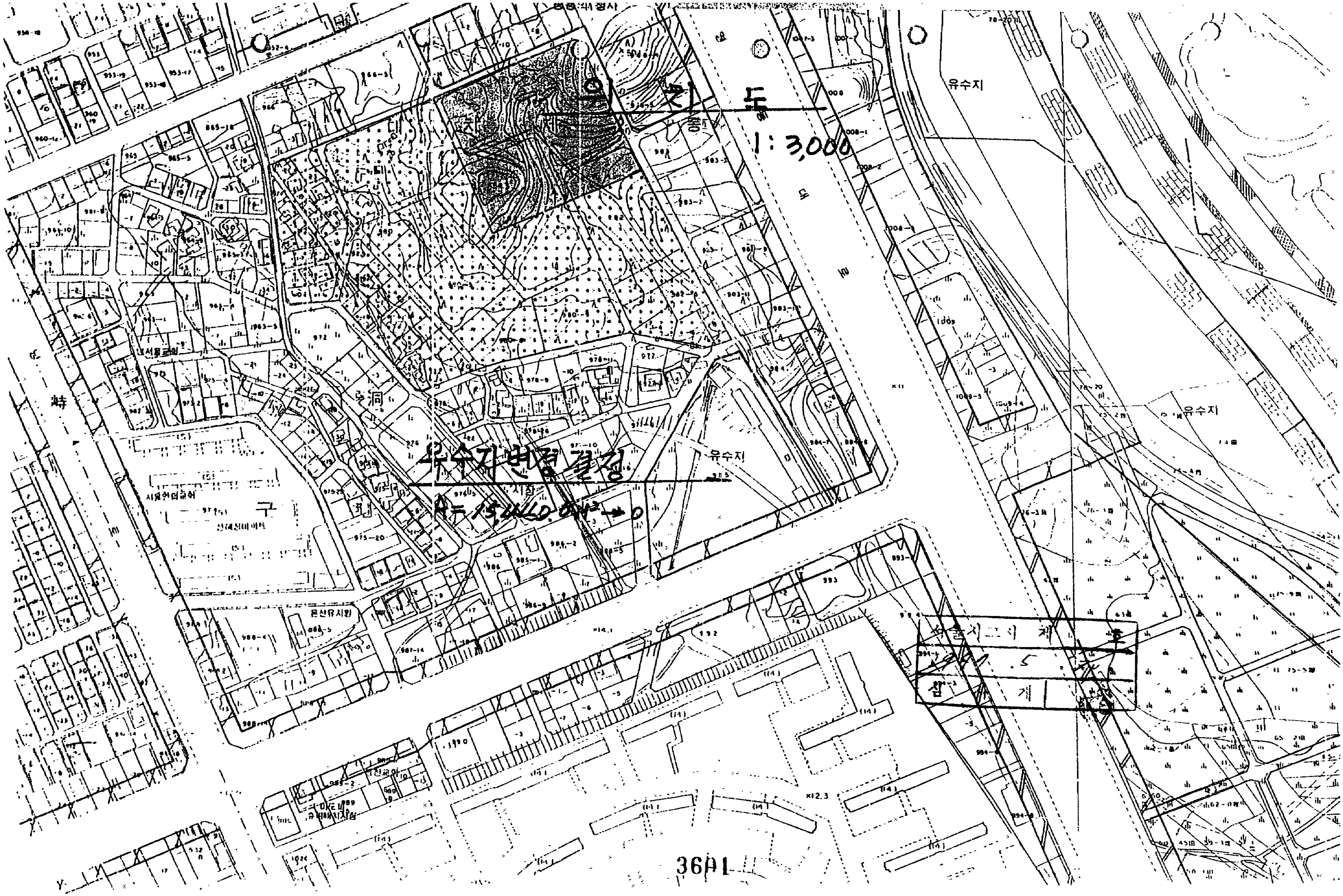
위 치 도
1:3,000
유수지변경결정
유수지
유수지
유수지